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3. 9. ~ 3. 18.(10일간)

<2026. 3. 18.(수) 10:00 제2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목 차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심사결과	페이지
1	9-765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수정가결	1
2	9-766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원안가결	7
3	9-76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원안가결	9
4	9-768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원안가결	11
5	9-76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원안가결	13
6	9-77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원안가결	15
7	9-771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원안가결	17
8	9-772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전예슬 의원	원안가결	19
9	9-773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등	원안가결	21
10	9-759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회계과)	원안가결	23
11	9-760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24
12	9-761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기후환경정책과)	원안가결	26
13	9-762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안전정책과)	원안가결	28
14	9-76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스마트교통안전과)	부결	30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5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2. 27.
- 나. 제출자 : 이상복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6. 3. 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도현 의원)

- 현행 조례는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가 실제 법률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법률환경 변화와 비용 현실화를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3조제3항)
- 소송비용 지급 기준 등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관례(대법원1996. 2.15. 선고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적법한 공무수행을 한 공무원(또는 의원)을 보호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원 한도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道내 14개 시군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범위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는 점과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개정 시행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발의 : 송진영 의원(대표발의)

□ 수정이유

-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집행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수정함.

□ 주요골자

-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3조제3항)
(소송비용 한도: 현행 1천만원 -> 개정안 2천만원 -> 수정안 3천만원)

□ 수정안 : 별첨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송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765-1호 (원안 9-765)
----------	-------------------------

발의년월일 : 2026년 3월 16일

발의의원 : 송진영, 성길용, 전도현,
조미선, 전예슬 의원

수정이유

-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집행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수정함.

주요골자

-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3조제3항)
(소송비용 한도: 현행 1천만원 -> 개정안 2천만원 -> 수정안 3천만원)

수정안 : 별첨

【별첨】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소송비용 지원)</p> <p>①·② (생 략)</p> <p>③ 소송비용은 심급 별로 <u>1천만원</u>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 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④ (생 략)</p>	<p>제3조(소송비용 지원)</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천만원</u>-----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소송비용 지원)</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3천만원</u>-----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6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전도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도현 의원)

-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7항)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등 개정
(안 별표 1 및 별표 2)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임.
- 배점기준 중 ▲정기예금 예치금리 배점을 현행 7점에서 8점으로,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에 대한 배점을 현행 7점에서 8점으로 각각 상향하는 사항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7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전도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도현 의원)

-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을 추가함(안 별표 15)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¹⁾,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²⁾ 별표 16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6 제2호 카목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용도지역내 건축물 허용 여부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1)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8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조미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조미선 의원)

-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상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범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
-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포함

(안 제6조)

-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

(안 제6조의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장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며,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69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조미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조미선 의원)

○ 관내이용자 아닌 자가 관내 체육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가산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내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사용료 가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란 상충 문구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별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관외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고자 발의되었음.
- 최근들어 공공 체육시설의 공공재 성격(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내이용자와 관외이용자간의 시설 이용료를 차등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도내 26개 시군에서 관내·관외 이용료에 차등 규정을 두고 있음.
-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이용자와 관외이용자를 구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사항은 관내 시민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70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조미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조미선 의원)

○ 관내 도심지역 중심으로 주차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경찰 순찰차가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3제1항)

○ 전용주차구획에 노면표지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 자동차 견인 조치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제2항)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거점순찰을 통한 신속 대응 및 가시적 효과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71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예슬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2. 26.
- 나. 제출자 : 전예슬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6. 3. 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예슬 의원)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참여 확대, 반려동물 교육·문화·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반려동물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화(안 제4조)
-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안 제12조)
-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반려인 의무에 대한 교육·홍보 규정 신설(안 제14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 확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72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전예슬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2. 27.
- 나. 제출자 : 전예슬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6. 3. 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예슬 의원)

- 최근 중앙정부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오산시 또한 데이터정책과 신설 등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6조 ~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신뢰 기반 사회 구현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기본 조례로서, 조례의 상당 부분이 원칙적·포괄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향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773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의의원 : 이상복, 전도현,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이상복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도현 의원)

-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당선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안 제8조제3항)
-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 기한 변경 및 당선인 후보 등록 조항 신설(안 제8조제5항)
- 의장·부의장 후보 중복 등록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제6항)
- 임시의장 선거시 등록절차 생략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시 당선자 결정방식을 현행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시 다른 직에 중복하여 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것(중복 입후보)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명확성과 피선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의회규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59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출자 : 오산시장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대부료의 요율’ 신설 (안 제28조제6항)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초지법」 제1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0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 출 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예정에 따라 통·반 신설, 지번 정정 및 경계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조정 (안 별표1, 별표2)
 - 남촌동 2개통(24개반) 신설
 - 초평동 3개통(22개반) 신설
- 경계구역 조정, 주소 정정(지번 변경) 등 (안 별표2)
 - 남촌동 2개통의 5개반 조정, 1개반 삭제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지번 정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1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도시주택국장)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3장 제목, 제9조·제10조)

○ 민간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3항)

○ 시민의 참여 범위를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확대
(안 제26조제2항)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2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2. 27.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3. 9.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시민안전국장)

○ 오산시 관할 담당 군부대의 조정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할 담당 군부대 조정 및 국가정보원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변경 (안 제3조·제4조)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변경 (안 별표)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할 담당 군부대의 조정 사항과 국가정보원의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63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2. 27.
- 나. 제 출 자 : 오산시장
- 다. 회부일자 : 2026. 3. 9.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3. 16.)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 제2차 (2026. 3. 17.)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시민안전국장)

-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범위와 설치 의무 면제 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범위 변경 (안 제22조제1항)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2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변경 (안 제23조제2항)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대수 300대 이하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음.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허용거리 축소)** 주차장법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에 관해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의 경우 현행 ‘직선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100대~300대 기준)의 허용거리를 ‘직선거리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로 축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 이는 주차장이 시설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차 문제와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규제 정책 적용의 필요성 검토)** 현행 인근 설치 거리 기준이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상황인지, 또는 우리시 주차장 수급 상황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거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정책 적용시 풍선효과에 대한 검토)** 현행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가 사실상 곤란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설치 비용 납부를 통해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물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적용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한편, 시설물을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시설물에 대해 개정안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례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안 제22조의2에서 “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및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토지가액의 산출 기준을 정비한 것은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우리시 주차장 수급 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함.